

研究資料

88-1

美國의 雇傭統計解說 (問答式)

1988. 4

調查統計局 社會統計課

032833

일 러 두 기

이 책자는 美國의 家口對象調査인 CPS (Current Population Survey)의 調査過程과 調査上的 諸 疑問點들을 美國 聯邦勞動省 統計局에서 지난 1983년 9월에 알기쉬운 問答形式으로 發刊한 「Workers, Jobs and Statistics」를 金相植事務官 (전화 720-2785)이 번역한 것이다.

또한 이 책자의 부록에는 美國의 同機關에서 每月 發刊 配付하고 있는 「Employment and Earnings」(1987.9월)의 統計表 중에서 주요한 것을 발췌 수록하였다.

이 책자가 美國의 雇傭統計 作成過程과 諸 疑問點들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雇傭統計를 改善하는데 參考資料로 活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88. 4. .

社會統計課長

盧 載 坤

目 次

- 雇傭에 關한 統計는 어떻게 蒐集 公表되는가? 5
- CPS는 어떻게 實施되는가? 6
- CPS는 失業者만을 把握하기 위한 調査인가? 7
- 實際 周邊에서 CPS의 調査對象으로 調査되는 家口의 事例를
찾아 보기 어려운데 CPS 調査는 정말로 全國의 雇傭狀態를 제대
로 反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7
- 그동안 勞動力統計의 諸 概念이 많이 바뀌었는지? 8
- 「國家諮問委員會」에서 勸告한 內容中 特徵的인 것은 무엇인지? 8
- CPS에서 「就業者」의 概念은 무엇인가? 9
- 調査對象週間에 한사람이 두 職業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調査되는지? 9
- CPS에서 「失業者」의 概念은 무엇인가? 10
- 「求職活動」이란 具體的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11
- 軍人力을 勞動力統計에 算入함으로서 調査結果 推定에 얼마만한
영향을 가져왔는가? 12
- 「非經濟活動人口」와 「失業者」와의 差異는 무엇인가? 12
- 「失望失業者」란 무엇인가? 13
- 「失望失業者」는 왜 「失業者」에 포함될 수 없는가? 14
- 失職後 求職活動을 하는 사람만이 失業者に 해당되는가? 14
- CPS에서 罷業中인 者는 就業者인가 失業者인가? 한편 疾病
또는 一時解雇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分類되

는지?	15
○ 一時解雇中인 사람을 失業者로 分類하기 위해서는 原來의 職場으로 復歸가 確實視되어야 하는가?	15
○ 調査對象週間에 일을 하면서 求職活動을 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調査 分類되는지?	16
○ 풀타임 (Full time) 일을 구하지 못하여 파트타임 (Part time) 일을 하는 사람은 就業者인가 또는 部分的인 失業者인가?	16
○ CPS를 통해서 家口內의 主要 勞動力層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Part time) 일을 하는 配偶者 또는 10代 靑少年들의 失業狀態를 어떻게 把握할 수 있는가?	17
○ 學生으로서 求職活動을 하면 失業者로 分類되는지?	18
○ 就業者 또는 失業者에 外國人도 포함되고 있는지? 또 CPS를 통하여 不法外國滯留者 또는 이들의 就業狀態를 把握할 수 있는지?	19
○ CPS는 地下經濟의 不法的인 經濟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에 關係해서도 調査되고 있는지? 이들의 活動이 하나의 經濟活動 類型으로 調査될 경우 失業者로 分類되는지?	19
○ 모든 失業者는 失業保險金을 받게 되는지? 失業保險受惠 對象에서 除外되어도 계속 失業者로 看做되는지?	20
○ CPS 調査結果의 失業者數와 失業保險制度의 受惠與否에 따라 調査한 失業者數를 比較해 보면 어떠한가?	21
○ CPS의 失業者 概念이 너무 狹意的이라는 批判에 대해 어떻게 對應하고 있는지?	21

- 新聞等の 廣告媒體에 求人廣告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失業率이 높은 理由는 무엇인가? 22
- 失業者중에는 眞實로 일자리를 願하지 않는 사람도 包含하고 있는지? 23
- 失業者中에 같은 사람이 계속 失業狀態에 있다는 一部の 主張이 있는데 事實인지? 24
- 失業者의 失業狀態가 時間의 흐름에 따라 많은 變化가 있다면 特定한 1個月 동안 보다 1年 동안에 失業經驗을 해 본 사람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는지? 24
- 歴史的으로 볼때, 失業率이 過去보다 近來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25
- 過去에 비해 近來의 失業率이 높은 것은 失業의 概念이 擴大되어 過去에는 失業者로 調査되지 않던 사람이 現在는 失業者로 調査되는데에도 原因이 있는지? 26
- 不完全就業者에 關하여 公式的으로 調査하고 있는지? 26
- 政府에서는 勤勞者 生活의 經濟的 어려움을 어떠한 方法으로 分析하고 있는가? 27
- 失業의 形態와 原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8
- 小數民族集團에 關한 勞動力統計도 作成 公表하고 있는지? 29
- 흑인의 雇傭水準을 백인과 比較해 보면 어떤가? 또 스페인계 民族의 雇傭狀態는 어떤지? 30
- 10代 靑少年 失業者는 成人失業者와 比較해 볼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30

○ 就業者의 職業에 關한 資料는 어느 정도까지 活用 可能한가?	31
○ 1983 年에 職業分類體系가 왜 바뀌게 되었는지?	31
○ 就業者의 職業別 資料도 國家 全體 뿐만 아니라 地域別까지도 生産되고 있는지?	32
○ CPS는 勤勞者 및 그 家口所得에 關한 資料도 提供하고 있는지?	32
○ 最近에 女性의 經濟活動 參加가 增加하고 있는지?	33
○ 男子의 經濟活動 參加率이 떨어지는 理由는 무엇인가?	34
○ 大都市地域과 其他地域의 失業狀態를 比較해 보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34
○ 州 및 主要 地域別 勞動力統計도 生産하고 있는지?	35
○ 州 또는 地域別 勞動力 統計資料를 國家 全體 資料에 一致시키고 있는지?	35
○ 勞動力統計資料를 季節調整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36
○ 勞動統計局은 CPS 結果外에도 事業體調查結果를 公表하고 있는데, 事業體調查結果는 어떠한 資料이며 이들 兩 調查結果를 어떻게 比較活用할 수 있는지?	37
○ CPS의 就業者와 CES의 勤勞者間 概念差異는 무엇인가?	38

附 錄

I. 統計表	43
II. CPS의 資料處理日程	62

問. 雇傭에 關한 統計는 어떻게 蒐集 公表되는가?

【答】

美國聯邦 勞動省의 勞動統計局에서 每月 就業者와 失業者, (就業者와 失業者를 勞動力人口 또는 經濟活動人口라함) 非勞動力人口 (또는 非經濟活動人口) 에 關하여 分析, 公表하고 있다. 이들 各 그룹은 年齡, 性, 人種 및 社會經濟的 特性別로 分類되고 있다. 이 統計는 勞動省 勞動統計局을 代身해 商務省 統計局에서 每月 調査하는 CPS (Current Population Survey) 結果에 依한 것이다.

月別調査인 CPS는 全國에서 統計的 方法으로 抽出된 60,000 餘 標本家口中 生産可能年齡 16 歲以上者를 對象으로 調査하고 있다. 標本家口는 各州 및 워싱턴 D.C.를 總 網羅하여 都市 및 農村地域과 國家 全體의 産業 形態를 나타낼 수 있는 各樣의 工業 및 農業地域等を 考慮하여 抽出되었다. 1986 年을 基準으로 볼 때 하나의 標本家口는 約 1,300 家口를 代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勞動統計局은 非農業의 標本事業體에서 매월 雇傭統計 資料를 蒐集하고 있다. 이는 家口 調査와는 달리 事業體 調査는 失業에 關한 資料를 提供해 줄 수 없다. 同 調査結果는 事業體의 雇傭, 就業時間, 賃金所得에 關한 좋은 資料가 되고 있다.

問. CPS는 어떻게 實施되는가?

【答】

商務省 統計局 산하의 熟練된 약 1,000 명의 調査員이 每月 19日이 包含된 實査週間에 標本으로 選定된 家口를 對象으로 調査한다.

調査員은 12日이 包含된 1週間을 調査對象 期間으로 하여 標本家口內 16才以上 家口員의 各 個人別 經濟活動狀態에 關하여 調査票上의 各項目을 質問, 調査票를 作成한다.

應答家口의 負擔을 덜어주기 爲해 標本交替方法을 導入하고 있는데 標本家口로 選定된 家口는 4個月間 계속 調査되고, 8個月을 중지한 다음 다시 4個月間 調査하게 된다. 이러한 方式은 標本調査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爲해 每月 調査區內의 標本家口를 4分之1씩 交替하여 1年間에는 2分之1씩 바뀌도록 하고 있다.

調査員은 첫째달과 다섯째 달에는 標本家口를 직접 訪問해서 面接調査하고, 그외 달은 通常적으로 電話인터뷰로 실시된다.

이 조사는 「家口主의 이름」에 依해서가 아니고 「住所」에 依한 표본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조사는 調査時點 當時 標本家口內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실시된다.

應答者의 應答內容은 商務省 統計局에 依해 徹底한 秘密로 保障되고 調査結果의 公表時에도 個人 또는 家口에 關한 어떠한 私的인 調査內容이라도 外部에 누설되지 않도록 統制를 받게 된다.

問. CPS는 失業者만을 把握하기 위한 調査인가?

【答】

그렇지만은 않다. CPS는 多目的 調査로서 調査對象人口를 就業者, 失業者, 非經濟活動人口로 分類하는데 그치지 않고, 性別, 年齡別, 人種別, 教育程度別 配偶關係別, 家口主와의 關係 等に 다른 職業 및 產業의 勞動市場 分析을 위한 綜合的인 情報源이 되고 있다. 또한 CPS는 파트타임, 풀타임 등의 다른 勞動力 特徵에 關해서도 情報를 提供해 주고 있다.

위와같은 普遍的인 情報外에도 CPS는 特定한 勞動力集團에 關한 情報分析도 可能하게 해주는데, 예컨대 職業移動, 在學生들의 就業狀態 및 勤勞經歷 等の 分析報告 資料들이 勞動省 勞動統計局的 定期刊行物인 「月刊勞動誌」(Monthly Labor Review) 등에 公表되고 있다.

問. 實際 周邊에서 CPS의 調査對象으로 調査되는 家口の 事例를 찾아 보기 어려운데 CPS 調査는 정말로 全國의 雇傭狀態를 제대로 反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答】

美國 全域의 家口들을 每月 全部 調査하기에는 現實的으로 不可能하기 때문에 商務省 統計局은 標本調査方法을 擇하고 있다. 따라서 標本調査 結果는 全數調査結果와 差異가 있게 마련이다. CPS 調査結果, 全國의 失業率 標本誤差는 90% 信賴水準에서 $\pm 0.2\%$ 포인트이다.

예를들어, 어느달의 失業率이 7.0%라면 全數調査에 依한 實際的인 失業率 水準은 6.8%와 7.2%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標本誤差水準을 考慮하여, 標本調査 結果를 活用함이 合理的이다.

問. 그동안 勞動力統計의 諸 概念이 많이 바뀌었는지?

【答】

現在 使用하고 있는 「勞動力人口」「就業者」「失業者」等の 概念은 지난 1940年에 導入된 것이다. 그동안 調査用語의 概念, 標本抽出方法, 調査課程, 調査票 項目 및 樣式 등에서 部分的인 改善은 있었으나 調査結果의 推定值에 影響을 줄 만큼은 아니었다.

勞動力調査의 諸 概念에 대해 最近 「就業 및 失業統計에 關한 國家諮問委員會 (NCEUS, National Commission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tatistics)」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 졌는데 지난 1978年 카터 大統領에 依해 設立된 同 委員會는 「勞動力調査」라는 報告書를 통해 「民間勞動力」「就業」「失業」「失業率의 算定方式」等 諸 概念의 現狀維持에 同意한 반면 追加的인 勞動力統計의 資料公表를 勸告하였다.

問. 「國家諮問委員會」에서 勸告한 內容中 特徴的인 것은 무엇인지?

【答】

同 委員會의 勸告內容中 하나는 美國內에 복무하고 있는 軍人力을 勞動力人口와 就業者에 包含하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美國에서의 軍服務는 自願的인 것으로 이는 勞動市場에서 하나의 職業選擇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勸告는 1980年에 勞働省 當局에 依해 採擇되어 研究檢討 段

階를 거쳐 1983年 1月부터 公式的으로 國家의 勞動力統計에 算入되었다.

이들 資料는 時系列的으로 1950年 以後부터 可能하였다.

軍人力의 勞動力統計 算入은 既存의 民間勞動力統計에 對한 補充的인 것이기 때문에 勞動統計局은 既存의 民間勞動力만을 對象으로 한 就業 失業 統計 뿐만 아니라 失業率 統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公表하고 있다.

問. CPS에서 「就業者」의 概念은 무엇인가?

【答】

CPS에서 「就業者」란 調査對象週間に 收入을 目的으로 最小限 1時間 以上 일 한 者 또는 家族이 經營하는 農場 또는 事業體에서 無給으로 最少限 15時間 以上 일 한 者를 말한다. 여기에는 職場 또는 事業體를 갖고 있으면서 疾病, 날씨, 休暇, 勞動紛爭 等の 事由로 調査對象 週間に 일을 하지 못한 一時休職者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僱傭主로 부터 給料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또는 求職活動을 했는지 與否를 不問하고 취업자에 포함한다.

問. 調査對象週間に 한 사람이 두 職業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調査되는지?

【答】

두가지 이상의 職業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調査한다. 다시말해서 調査對象 週間に 두가지 職場을 갖고 있는 경우, 그중 많은 時間을 勤勞한 職場에 對해서만 調査하게 된다. 즉, 就業時間은 그 사람에게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職場의 勤勞時間만을 記入하게 된다.

한편 勞動省 勞動統計局에서는 두가지 以上の 職業을 갖고 있는자 즉

i) 賃金勤勞者로서 두가지 以上 職業을 갖고 있는 자 ii) 한 職場에서는 自營者이면서 다른 職場에서는 賃金勤勞者인 경우 등에 關해서 特別調査를 實施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調査資料를 보면 두가지 職業을 갖고 있는 사람은 全體 就業者中 5% 程度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副業의 就業時間은 適當 12時間~13時間 程度로 나타나고 있다.

問. CPS 에서 「失業者」의 概念은 무엇인가?

【答】

失業者란 16才以上者中 調査對象 週間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實查週間前 4週동안에 積極的인 求職活動을 한 사람으로서 즉시 就業可能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實際的으로 求職活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0日 以內에 새로운 職業을 開始할자와 一時解雇(lay off)된 職場에 復歸(recall)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포함된다.

「失業者」의 概念定義는 個人的 年齡, 性, 配偶關係, 家口主와의 關係, 또는 家口所得등과 아무런 關聯이 없으며 實際 調査에서도 失業保險台帳, 福祉年金記錄簿等 調査員이 個人別로 面接한 調査事項外의 情報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問. 「求職活動」이란 具體的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答】

積極的인 「求職活動」이라 함은 事業體 直接訪問, 公的 또는 私的雇傭機關에 依賴, 親舊 또는 親知에 부탁, 勞動組合에 登錄, 新聞廣告를 내거나 찾아봄 등을 말한다.

위와같은 求職活動들은 CPS 實查週間前 4週동안에 있어야 하는데 「求職活動」與否를 判斷하는데는 本人에게 求職의 必要性 또는 欲求등의 主觀的인 意思가 있어야 할 必要는 없고 오직 客觀的인 活動狀態에 의해서만 決定되어진다.

實際的인 調查過程은 다음과 같다.

먼저 調查對象 週間에 職業이 없었거나 아무일도 하지않은 사람에 對하여 質問이 주어진다. 즉 「당신은 지난 4週동안 일자리를 찾아 보았습니까?」 「예」라고 대답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거리를 구해 보았습니까?」, 應答內容에 따라 求職方法들에 關한 調查票上의 例示들 중에서 하나를 調查員이 체크한다.

求職活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追加的으로 就業可能性이 있는지 與否를 (예컨데 學校에 다니고 있는지등) 質問하게 되는데 就業可能性이 없는 경우는 失業者로 分類되지 않는다.

問. 軍人力을 勞動力統計에 算入함으로서 調査結果 推定에 얼마만한 영향을 가져왔는가?

【答】

民間 就業人口에 170萬의 軍人力 算入은 그만큼 勞動力人口를 增加시키는 結果가 되었다.

비록 失業者數에는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全體 失業率은 民間 勞動力만의 失業率보다 0.1%~0.2% 포인트 낮아졌고, 男子만의 失業率은 0.2%~0.3%정도가 낮아졌으며, 女子의 失業率은 從前과 같았다.

其他 民間勞動力만의 調査結果 推定值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었다.

問. 「非經濟活動人口」와 「失業者」와의 差異는 무엇인가?

【答】

非經濟活動人口는 積極的인 求職活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失業者와 大別된다. 非經濟活動人口는 學生, 家事를 돌보는 主婦, 은퇴자, 不具者, 無爲徒食者 및 所謂 「失望失業者」등을 말한다.

비록 일자리를 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積極的인 求職活動을 하지 않으면 非經濟活動人口로 分類되는데 대체적으로 非經濟活動人口中 10%程度가 일자리를 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問. 「失望失業者」란 무엇인가?

【答】

失望失業者란 일자리 갖기를 원하면서도 자기에 알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調査對象 週間에 積極的인 求職活動을 하지 않아 非經濟活動人口로 分類된 사람을 말한다.

즉, 「失業者」의 要件中 「積極的인 求職活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失業者」가 아닌 「非經濟活動人口」의 類型으로 分類된 것이다. 다시말해서 失望失業者는 求職活動을 포기한 사람들인데 CPS는 求職活動을 포기하는 理由에서 「그 地域 또는 그 業種에서는 자신에게 適合한 일자리가 없을 것으로 믿어서」, 「前에 求職活動을 해 보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學歷, 技術, 經驗이 不足하다고 생각되어」, 「자신이 너무 어리다든지 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되어서」, 「性 또는 人種差別 등의 個人的인 缺格事由라고 생각되어」等を 例示하고 있다.

한편 「就業 및 失業統計에 관한 國家諮問委員會」(NCEUS)는 失望失業者를 單純히 「非經濟活動人口」로 分類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現在의 「失望失業者」概念을 보다 엄격히 規定하여 調査結果를 계속적으로 活用해 나가기 위해서는 實查週間前 6個月동안의 求職活動 有無 및 就業可能性을 就業希望意思와 함께 調査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

問. 「失望失業者」는 왜 「失業者」에 포함될 수 없는가?

【答】

各 個人의 勞動力 狀態의 調査分類는 本인의 意思 또는 생각에 依해서 가 아니고, 個人의 經濟活動狀態에 따라 決定되어 진다. 따라서 일하기를 願하면서도 積極的인 求職活動 努力을 하지 않은 사람은 失業者로 分類되지 않고, 非經濟活動人口로 分類된다.

이와같은 分類方式은 지난 1962年 「雇傭 및 失業統計에 關한 大統領 諮問委員會」의 勸告에 따른 것인데 이는 同 委員會가 失業者와 非經濟活動人口中 「勞動力供給」性을 갖고 있는 集團과의 區別을 찾기 위한 결과 였다. 그후 1979年에 「就業 및 失業統計에 關한 國家諮問委員會」(NCEUS)가 비록 「失望失業者」의 概念을 보다 客觀化시킬 것을 勸告하면서도 同 委員會는 失望失業者를 「失業者」보다는 「非經濟活動人口」로 계속 分類할 것을 強調 하였다.

問. 失職後 求職活動을 하는 사람만이 失業者に 해당되는가?

【答】

그렇지만은 않다. 失業者中 일부는 처음으로 그들의 職業을 찾는 사람이 고 나머지는 失職後에 다시 求職活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중에는 自意的으로 職場을 그만둔 뒤에 다른 職場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나 상당수가 他意에 依해 失職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他意에 依해 失職된 사람들의 比重은 好景氣에서는 40%정도, 不景氣에서

는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

問. CPS에서 罷業中인 者는 就業者인가 失業者인가?

한편 疾病 또는 一時 解雇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分類
되는지?

【答】

罷業中인 者, 疾病·休暇·日氣不順 等の 理由로 그들의 職場에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就業者로서 「一時 休職者」로 分類된다.

그러나 一時解雇되어 職場復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失業者로 分類된
다. 따라서 罷業等の 影響으로 一時的인 解雇를 당해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은 失業者로 分類 調査된다.

**問. 一時解雇中인 사람을 失業者로 分類하기 위해서는 原來의 職場으
로 復歸가 確實視되어야 하는가?**

【答】

事業主의 立場에서는 從前의 生産活動 水準을 變更하여 製造工程, 營業
活動 狀態에 變化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一時解雇中인 사람이 職場
復歸를 苦待한다고 해서 모두가 實現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一時解雇
中인 사람이 職場復歸가 되었다던지 또는 同一事業體內의 他 部署에 採用
配置될 경우에만 失業者로 分類하는 것이다.

實際, 調査結果에 依하면 一時解雇中인 사람중 75% 程度가 從前의 職場

으로 復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景氣沈滯期에는 그 比率이 多小 떨어지는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問. 調査對象 週間에 일을 하면서 求職活動을 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調査分類 되는지?

【答】

CPS는 調査對象週間에 어떤 사람이 여러가지의 活動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그중 주된 한 가지의 活動狀態에 따라 調査分類하고 있다. CPS의 여러 活動類型中 就業活動은 求職行爲보다 優先하고, 兩者는 非經濟活動보다 優先한다.

따라서 調査對象週間에 就業活動도 하면서 求職活動을 한 경우는 「**就業者**」로 分類 調査된다.

問. 풀타임 (Full time) 일을 구하지 못하여 파트타임 (Part time) 일을 하는 사람은 就業者인가 또는 部分的인 失業者인가?

【答】

CPS에서 就業者로 分類되기 위해서는 收入을 目的으로 最小限 週當 1時間 以上 일한자이어야 한다.(그런데 事實 週當 5時間 未滿 일한 사람은 極히 드물다.) 그러나 就業者는 就業形態에 따라 풀타임, 파트타임의 두 가지가 있다. 勞動統計局은 일거리不足, 資材不足, 工場 및 施設補修, 새로운 일의 始作 또는 終了등의 事情으로 週當 35時間未滿 일한 사람은 “**經濟的 理由로 因한 파트타임 就業者**”로 分類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비록 일자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不可抗力 事情으로 풀타임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學者들중 일부는 이들을 “不完全雇傭 就業者” “部分的 失業者”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많은 파트타임 就業者들은 非經濟的 理由(勞使紛爭, 日氣不順, 個人的疾病, 休暇, 就學, 家事事情 또는 個人選好等)로 因해 追加的인 일을 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을 CPS는 “其他 理由로 因한 파트타임 就業者”로 分類 調査하고 있다.

問. CPS를 통해서 家口內의 主要 勞動力層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Part time) 일을 하는 配偶者 또는 10代 靑少年들의 失業狀態를 어떻게 把握할 수 있는가?

【答】

CPS의 失業統計는 全體의 勞働供給量을 測定하기 위해 求職活動을 하는 모든 사람을 失業者로만 分類 調査하지 그들의 生活狀態에 따른 失業의 輕重度에 關한 價値判斷 要素는 內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失業」狀態는 모든 사람에게 深刻한 問題로서 單純히 個人的인 經濟的 困境으로서만이 아니라 家計維持 또는 社會心理的 壓迫의 側面에서도 問題가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10代 靑少年層의 境遇 계속적인 失業狀態로 因하여 心理的인 좌절감을 갖게됨으로서 成長한후 健全한 社會生活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

한편, 男便과 아내 모두 就業活動을 하는 경우나 그중의 한사람이 家計收入 補助를 爲해 副業을 갖고 있는 경우, 그중 한사람의 失職이 그

家計의 生活維持에 얼마나 經濟的 어려움을 줄 것인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分析目的들(10代 청소년층 및 파트타임 근로하는 배우자의 실업문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資料利用者들이 失業狀態의 相對的 輕重度를 判斷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勞動統計局은 各 年齡階層別 失業統計資料를 公表하고 있다.

問. 學生으로서 求職活動을 하면 失業者로 分類되는지?

【答】

16才以上者中 일을 하였던지 또는 就業可能性이 있는자가 求職活動을 하였으면 모두 勞動力人口로 分類된다.

그런데 學生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로 學校에 다니기 때문에 勞動力人口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일을 할 경우 國家의 生産活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勞動力人口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CPS 調查結果를 보면, 10代青少年 失業者中 절반정도가 學校에 다니고 있는데, 實際 調查過程에서도 전적으로 學校에만 다니고 있는 學生으로서 求職活動을 한 경우에 即時 就業可能性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失業者로 分類되지 않고 있다. 「就業 및 失業統計에 관한 國家諮問委員會」(NCEUS)는 學生이라 하더라도 다른 調查對象人口와 마찬가지로 그 活動狀態 및 分類基準에 依據 調查할 것을 勸告하고 있고 이러한 勸告에 따라 CPS에서도 1983年 10月부터 月別로 適用 調查하고 있다.

問. 就業者 또는 失業者에 外國人も 포함되고 있는지? 또 CPS를 통하여 不法外國滯留者 또는 이들의 就業狀態를 把握할 수 있는지?

【答】

CPS는 調査對象人口의 國적과 아무런 關係가 없다. 즉 標本家口內의 居住者가 外國人 또는 不法滯留者라 하더라도 國적을 不問하고 各 個人別 經濟活動狀態에 따라 調査를 한다. 따라서 外國人, 不法滯留者 等에 關한 資料를 提供해 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지난 1980년에 商務省 統計局에서 美國內의 不法滯留者에 關한 特別研究作業을 實施하였는데, 그 結果 1978年末 현재 不法滯留者는 350만명 내지 5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推計되었고, 그들의 雇傭狀態에 關해서는 어떠한 情報도 얻지 못했다.

問. CPS는 地下經濟의 不法的인 經濟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에 關해서도 調査되고 있는지? 이들의 活動이 하나의 經濟活動 類型으로 調査될 경우 失業者로 分類되는지?

【答】

地下經濟의 活動狀態가 어느정도 調査되고 있는지는 實際 調査過程에서 포착하기 어려우므로 알 수가 없다. 즉 調査對象者의 自發的 協調에 依해서 이루어지는 CPS에서는 調査對象者의 活動狀態가 不法的인 業務에 屬하는지는 본인들의 應答만으로 判斷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分野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實查段階에서 漏落되게 마련이다.

一般的으로 볼때, 不法的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勞動力人口 分類體系上 스스로 失業者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CPS에서도 失業者로 分類하지 않고 있다. CPS는 단지 就業者와 失業者를 區分하기 위해 一連의 質問項目을 調査하는 것이지 調査過程에서 「失業者」와 같은 具體的인 用語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한편 CPS는 合法的인 일과 不法的인 일로 區分해서 調査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不法的인 地下經濟의 經濟活動狀態를 把握할 수가 없다.

問. 모든 失業者는 失業保險金을 받게 되는지? 失業保險受惠 對象에서 除外되어도 계속 失業者로 看做되는지?

【答】

모든 失業者가 失業保險 惠澤을 받는것은 아니다. 失業保險 受惠를 받기 위해서는 一定한 受惠條件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保險惠澤을 받기 위한 條件은 各州마다 相異하다.

CPS에서 失業者로 分類 調査되는 사람중에서 일반적으로 失業保險 惠澤을 받지 못하는 失業者로는 (1) 失業保險受惠 滿期者 (2) 勞動市場에 처음 나온 新規勞動力人口 (3) 受惠資格을 얻을만큼의 收入을 갖지 못했던者 (4) 其他 非受惠 部門에서 就業했던 자 (自營業者, 無給家族從事者, 非營利機關勤勞者) 등이다. 要컨데 失業保險制度에 依한 失業保險受惠 與否는 CPS에서 失業者로 分類 되는것과 아무 聯關이 없다.

問. CPS 調査結果의 失業者數와 失業保險制度의 受惠與否에 따라 調査한 失業者數를 比較해 보면 어떠한가?

【答】

失業保險 受惠對象者數는 景氣狀態에 따라 큰 幅으로 變化하고 있다. 즉 景氣沈滯期 前後로는 受惠對象者가 많아지고, CPS의 失業者數에 대한 比率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지난 1973-1975 年의 景氣不況 時에는 CPS 失業者의 3분의 2가 失業保險 受惠者이었으나, 80 年代에 들어와서는 그 比率이 많이 떨어졌다. 이는 失業保險法의 變更으로 受惠對象資格이 바뀌었기 때문으로도 파악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失業保險 受惠者數는 CPS의 失業者數 보다 절반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問. CPS의 失業者 概念이 너무 狹意的이라는 批判에 대해 어떻게 對應하고 있는지?

【答】

失業者의 概念과 計測方法에 대해 많은 論難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現在 失業者가 너무 적기 때문에 勞動力의 非活用度를 正確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失業者數가 너무 많아 실제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正確히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主張들에 대해 勞働省 勞働統計局은 多樣한 指標들을(既婚 男性 및 女性, 成人 勤勞者, 풀타임 勤勞者, 失業期間 15 週 以上인 者) 考

慮한 諸 失業率을 每月 作成 公表하고 있다.

즉, 勞動統計局은 가장 좁은 意味의 失業率 U_1 에서 부터 가장 넓은 意味의 U_7 까지 作成 公表하고 있다.

가장 좁은 意味의 失業率 U_1 은 民間勞動力에 대한 失業期間 15週 以上인 失業者만의 百分 比率을 말하는데, 이는 失業期間이 長期間 持續됨에 따라 生活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生活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失業者만의 失業率을 가리킨다.

한편 U_7 은 가장 넓은 意味의 失業率을 말하는데, 이는 非自發的인 파트타임 勤勞者와 失望失業者를 모두 失業者로 看做해서 算出한 失業率을 가리킨다. U_7 은 非自發的 파트타임 勤勞者는 最小限의 不完全한 失業者로 볼 수 있다는 點과 失望失業者는 비록 求職活動을 포기 하였다 하더라도 就職하기를 願한다는 점에서 失業者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구체적 내용은 부록에 수록된 表 -13 참조)

問. 新聞等の 廣告媒體에 求人廣告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失業率이 높은 理由는 무엇인가?

【答】

높은 失業狀態下에서도 종업원을 구하는 雇傭主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求人者만큼 失業者數가 減少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現實的으로 는 그렇지 않다. 즉 한 國家內에서라도 어떤 地域에서는 일자리가 就業 希望人口보다 많이 있는 반면, 다른 地域에서는 일자리가 不足해서 失業者가 더 많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失業者群을 포착해서 다른 地域으로 이주시켜 就業시킨다는 것은 現實적으로 不可能한 것이다. 특히 이들이 雇傭主가 願하는 만큼의 技術水準과 教育程度를 保有하고 있지 못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반대로 失業者들 中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技術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職場이나 前에 받았던 報酬보다 적은 職場에 就業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要因들로 인해서 높은 失業水準과 종업원을 구하는 職場이 동시에 發生할 수 있는 것이다.

問. 失業者 中에는 眞實로 일자리를 願하지 않는 사람도 包含하고 있는지?

【答】

調査票上의 項目에 대한 應答者의 應答內容에 의해서만 調査되는 CPS는 이러한 內容까지 찾아 내기란 事實上 어려운 일이다.

CPS는 調査對象 週間の 活動狀態에 關해 調査員이 面接 調査한 項目內容만에 依해서 調査對象者의 活動狀態가 決定된다.

따라서 現實적으로는 失業者中에 眞實로 일자리를 願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지만, 勞動統計局은 이와같은 內容까지 分析하고 있지 않다.

問. 失業者 中에 같은 사람이 계속 失業狀態에 있다는 一部の 主張이 있는데 事實인지?

【答】

그렇지 않다. 景氣沈滯期를 除外하고는 대체적으로 失業者중 2分の1以上이 한달후면 活動狀態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就業者나 非經濟活動人口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失業者 集團內에 많은 變化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景氣好況期에는 平均 失業期間이 10週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景氣가 惡化되면 失業者는 많아지고 失業期間도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81-1982年의 景氣沈滯期에서 平均 失業期間이 18週 정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2年 以後에는 다음달까지 失業狀態가 持續되는 比率이 60%정도고, 나머지는 就業者와 非經濟活動人口로 각각 20%씩 바뀐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問. 失業者의 失業狀態가 時間의 흐름에 따라 많은 變化가 있다면 特定한 1個月 동안 보다 1年 동안에 失業經驗을 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는지?

【答】

그렇다. 年間 就業活動에 關한 CPS의 追加的인 調査 結果에 依하면, 보통달의 失業者數보다 1年 동안의 失業經驗者가 2.5배 내지 3.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1 年의 경우 年間 失業을 經驗한 사람이 2,340 만명으로 平均 失業者數 830 만명보다 2.8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問. 歴史的으로 볼때, 失業率이 過去보다 近來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答】

長期的으로 볼때, 國家의 勞動力은 全體 人口의 規模, 人口特性別 構成比, 經濟活動參加率 等に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1940 年代 後半에서 1950 年代 中半까지는 失業率이 3.0%~4.0% 정도이었고, 1960 年代와 1970 年代初까지는 5.0%~6.0%이었다.

1970 年代 中半以後는 대부분 7.0%를 上回하는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戰後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하여 勞動力 人口로 勞動市場에 登場하여 壓迫要因으로 作用해 失業率을 全般的으로 上昇시킨 結果로 보여진다. 더욱이 二次大戰後 80 年代初에 이르기까지 여덟번의 景氣沈滯를 거치는 동안 失業率이 계속 上昇하였고 特히 景氣回復期가 到來하더라도 失業率이 떨어지지 않는 現狀을 보임으로서 結局 이러한 效果들이 累積되어 近來에 失業率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問. 過去에 비해 近來의 失業率이 높은 것은 失業의 概念이 擴大되어
過去에는 失業者로 調査되지 않던 사람이 현재는 失業者로 調査
되는 데에도 原因이 있는지?

【答】

1940 年에 CPS 를 實施한 以後 調査方法과 失業의 概念이 약간 變化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失業率의 계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
니었다. 따라서, 1950 年의 失業率 5.3 %와 1969 年의 3.5 %, 1982 年의
9.7 %, 1986 年의 7.0 %는 相互 直接 比較가 可能한 것이다.

問. 不完全就業者에 關하여 公式的으로 調査하고 있는지?

【答】

不完全就業者란 일반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技術, 經驗, 學歷等에 비
하여 그만큼 報酬를 받지 못하고 있던지 또는 이러한 要素들을 충분히
活用할 수 없는 職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예컨대 카운슬
러 자격을 갖고 있는 택시운전사를 들 수 있다.

또한 不完全就業者는 그들의 能率과 生産을 最大限으로 제고하기 위해
必要的인 裝備과 施設을 保有하고 있지 못할 때에도 發生한다. 그런데 現
實的으로 調査員이 實查過程에서 不完全就業者를 分類하는데 適用할 수 있
는 客觀的인 準據基準을 세우기가 至難하기 때문에 公式的인 不完的 就
業者에 關한 資料 生産이 不可能한 實情이다.

또한 비록 不完全就業者를 포착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의 不完全就業 程度를 計量化 하기란 事實上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不完全就業者가 正確히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勞動統計局은 풀타임 일을 願하면서도 經濟的 事情으로 因해 適當 35時間 未滿 밖에 일하지 못하는 就業者에 關한 資料를 生産하고 있는데, 이러한 資料는 不完全就業者를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計測方法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問. 政府에서는 勤勞者 生活의 經濟的 어려움을 어떠한 方法으로 分析하고 있는가?

【答】

CPS에는 勤勞者生活의 經濟的 困難에 關한 調査項目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대신 勤勞時間 또는 職場을 찾기위한 勞力等に 焦點을 두고 있다. 즉 어떤 計量的인 指標라 하더라도 그들 自身の 勤勞時間 減縮, 低賃金, 失業 등에서 느껴지는 財政的, 精神的인 主觀的 苦痛의 程度를 가리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勞動統計局은 勤勞者 生活의 經濟的 困難의 程度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매년 3월에 CPS와 병행하여 家計所得과 勤勞者의 雇傭狀態에 關한 追加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이 調査結果에 依하면, 勤勞者中에는 1年동안 풀타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家計의 生活水準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家口員中 일부 勤勞者의 所得만으로도 그 家計가 維持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調査資料에 依하면, 失業者中 30% 정도는 同一家口内の 다른 就業家口員의 勤勞로 年間 20,000 달러가 넘는 家計收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같은 年間 調査資料는 美國家計의 生活程度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 움을 주고 있다.

問. 失業의 形態와 原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答】

經濟學者들은 일반적으로 失業의 形態로 다음의 세가지 즉 마찰적, 構造的, 景氣的 失業을 指摘한다.

(1) 마찰적 失業은 失業期間이 短期的인 것이 特徵이다. 마찰적 失業은 就業機會에 關한 情報不足, 就業斡旋機關의 未備等に 基因하는데, 마찰적 失業者는 처음으로 勞動市場에 流入되었다던지 또는 다른 일자리로 옮기기 위해 既存의 일자리를 그만둔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 構造的 失業은 失業期間이 長期的이라는 點이 特徵이다. 構造的 失業은 求入者가 要求하는 技術과 求職者가 갖고 있는 技術이 서로 一致 하지 않는데에서 주로 基因한다. 따라서 技術變化에 適應하지 못해서 失業되었다던지 또는 充分한 教育和 技術習得을 하지 못해 失業된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構造的 失業은 差別과 不均衡에 의한 就業難에서 오는 失業도 포함한다.

(3) 景氣的 失業은 景氣沈滯에 따른 營業活動의 不振으로 發生한 失業을 말한다. 이외에도 學者들은 季節的 失業을 追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季節的 要因 즉 酷寒期 到來에 따른 經濟活動의 不振, 여름방학중 아르바이트 求職學生의 殺到等에 의해서 發生하는 失業이다. 季節的 失業은 失業期間이 一時的이라는 點에서 마찰적 失業과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問. 小數民族集團에 關한 勞動力統計도 作成 公表하고 있는지?

【答】

小數民族에 대한 勞動力統計의 必要性은 認定하지만, 이들 民族의 人口가 相對的으로 적기때문에 標本調査 結果에서 이들만의 調査結果를 集計 推定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勞動統計局은 小數民族중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흑인과 스페인계 民族(이들은 全體人口에서 10%, 5% 정도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들에 관해서는 相當量의 勞動力統計 情報를 提供하고 있다.

흑인들에 關한 資料는 지난 1972年 以後 別個로 提供하고 있고(1980年 센서스에 의하면, 백인을 제외한 인구중에서 85% 정도가 흑인임) 스페인계(큐바인계, 푸에르토리코계, 멕시코계 포함) 民族에 대해서는 1973년부터 公表하고 있다.

이러한 資料들은 勞動統計局에 依해서 每月 定期的으로 分析 公表되고 있다.

問. 흑인의 雇傭水準을 백인과 比較해보면 어떤가? 또 스페인계 민족의 雇傭狀態는 어떤지?

【答】

1987.9月 現在 흑인就業者는 全體 民間 勞動力中에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全體人口의 構成比와 類似하다.

그러나 흑인失業者는 160여만명으로 全體失業者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勞動力人口 構成比의 두배정도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흑인의 失業率은 백인의 失業率보다 두배정도 높은 水準이다. 1987.9月 現在 흑인失業率은 12.4%인 반면 백인은 4.9%수준이다. 한편 스페인계民族의 失業率은 흑인과 백인失業率의 중간정도인 8.2%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問. 10代靑少年 失業者는 成人失業者와 比較해 볼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答】

歴史的으로 失業者를 年齡層으로 볼때 10代靑少年層이 제일 높은 失業率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靑少年이 成人과 比較해 볼때 대체적으로 經驗未熟, 技術 및 教育不足等の 原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87.9月の 경우 16~19세층의 失業率은 16.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成人의 失業率 5.7%보다 세배정도 높다.

全體 民間 勞動力中에서 10代靑少年들이 7%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失業者중에서는 1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흑인靑少年層에서 심각한 失業率(31.5%)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흑인靑少年의 失業率은 백인靑少年의 失業率보다 두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問. 就業者의 職業에 關한 資料는 어느 정도까지 活用 可能한가?

【答】

1983年 以後 CPS는 職業을 503개로 分類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이들의 職業分類는 6대분류—管理 및 專門職, 技術·販賣 및 行政職, 서비스職, 生産·修繕職, 裝備運轉·勞務職, 農林·漁業職—의 題下에 每月 調査 公表되고 있다. 더 나아가 年間 資料는 每月 資料보다 좀더 細分된 資料를 公表하고 있는데, 職業分類體系가 1983년에 바뀌어 1983年 前·後의 CPS結果의 職業分類를 1983年의 前·後의 것과 相互比較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問. 1983年에 職業分類 體系가 왜 바뀌게 되었는지?

【答】

1983년까지 職業分類는 크게 4가지로(事務職, 生産職, 서비스職, 農業職) 나눈 다음 細分類를 하였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分類方式은 經濟變化에 따른 職業과 技術樣相들을 모두 受容하지 못한다는 認識이 높아지게 되었다. 즉 當時까지의 職業分類體系上 事務職은 곧 高所得者라고 認

識되었지만 實際的으로는 事務職 內에서도 많은 所得의 差가 露出되었다. 또한 生産·技術職 勤勞者라 하더라도 事務關聯職들보다 높은 所得을 올리는 경우가 現實로 認識되었다.

이와같은 舊體系가 갖고있는 잘못된 認識을 修正할 必要가 있게됨에 따라 1983年부터 새로운 6大分類—管理 및 專門職, 技術·販賣 및 行政職, 서비스職, 生産·修繕職, 裝備運轉·勞務職, 農林·漁業職—下에 細分類를 하게 되었다.

問. 就業者의 職業別 資料도 國家全體 뿐만 아니라 地域別까지도 生産되고 있는지?

【答】

職業別 就業者に 關한 國家全體 및 地域別 資料는 지난 1970年부터 聯邦 및 地方政府의 協調에 依해서 實施하기 始作한 職業別 雇傭調査 (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以後 可能하게 되었다. OES는 非農林業의 全體事業體中 標本으로 抽出된 事業體 內의 職業別 雇傭狀態 調査인데, 標本事業體는 全國 및 各州의 非農 事業體內의 賃金勤勞者를 推定 可能하도록 事業體 規模別로 層化 抽出하였다.

問. CPS는 勤勞者 및 그 家口所得에 關한 資料도 提供하고 있는지?

【答】

CPS의 所得은 適當所得에 關해서 質問하고 있기 때문에 活用可能한

資料를 얻기 위해서는 賃金勤勞者의 分期別 平均資料를 利用함이 妥當하다. 分期別 所得關聯 資料에는 性別, 人種別, 家口主와의 關係, 家口員數, 失業 經驗家口 等 뿐만이 아니라 職業別로도 分類 公表하고 있다.

이외에도 年間 所得에 대해 每年 3월에 CPS와 併行해서 調査를 實施하고 있는데, 이 調査는 自營業者, 年間 풀타임勤勞者에 대해서만 調査하고 있다.

問. 最近에 女性의 經濟活動參加가 增加하고 있는지?

【答】

2次大戰以後 女性의 經濟活動參加가 계속 높아져 왔다.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이 1947년에는 34%, 1960년은 38%, 1970년은 43%, 1986년은 거의 56% 수준으로 점차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86년까지 全體就業者中 女性이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1947년의 28%와 비교해 볼때 크게 증가 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女性人力의 增加는 모든 年齡層에서 고루 增加하는 現狀을 보이고 있는데, 時代에 따라 增加하는 年齡層은 조금 相異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즉 1950年代까지는 學校를 바로 卒業한 人力들이 就業하였는데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45세 이상의 中年層 女性들(子女들이 모두 成長하였던지 또는 家事를 돌 볼 책임이 적은 中年女性)의 就業人口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年代以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에는 20代 女性 및 30代 初盤의 主婦들의 就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70代 以前까지는 많은 女性들이 結婚하게 되면 다니던 職場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出産率이 減退되면서 계속적으로 職場生活을 하는 女性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生活維持費의 上昇으로 副業을 해서 家計收入을 補助할 必要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問. 男子의 經濟活動參加率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答】

近來에 特히 高齡層 男子의 經濟活動 參加率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主된 理由는 過去보다 빨라진 勞動市場으로부터의 은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986년 現在 65세이상 男子中 20%미만이 經濟活動에 參考하고 있는 반면, 1960年代에는 40%수준으로 高齡男子의 經濟活動參加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젊은 男子層에서는 學業繼續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經濟活動參加水準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 女性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활발한 사회활동의 참여증가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問. 大都市地域과 其他地域의 失業狀態를 比較해 보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答】

大都市地域에서는 居住人口의 3分の 2 정도가 勞動力人口이다. 따라서 失業의 심각성은 大都市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主로 勞動力 階層—10代勞動力, 成人의 男子 및 女子, 흑인들—의 失業率은 非都

市地域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大都市地域에서도 周邊보다 都心の 失業狀態가 深刻하며 非農業地域이 全般的으로 農業地域보다 失業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問. 州 및 主要 地域別 勞動力 統計도 生産하고 있는지?

【答】

月別 勞動力人口, 就業者, 失業者 等に 關한 資料를 50 個州와 워싱턴 D.C, 200 個 大都市別로 生産·公表하고 있다.

또한 追加적으로 50,000 명 이상 人口가 居住하는 市·郡 單位에 대해서도 活用 可能하다.

10 個의 큰 州와 두개의 大都市地域(L.A. 와 N.Y.)은 CPS 調查結果에 直接 基礎하고 있고, 其他 州 및 餘他 地域에 대해서는 대부분 失業保險機關의 登錄資料를 基礎로 하여 推計하고 있다.

雇傭狀態에 關한 細分된 資料(人口 및 職業別 特性, 풀·파트타임 勤勞者, 失業期間)는 全國 50 個州, 35 個 大都市地域, 11 個 主要都市에 關해 CPS 結果의 年間値를 公表하고 있다.

問. 州 또는 地域別 勞動力 統計資料를 國家 全體 資料에 一致시키고 있는지?

【答】

대부분의 州 및 地域別 資料가 失業保險機關의 登錄資料에 基礎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資料를 國家 全體水準에 一致시키기 위해 CPS 結果에 맞춰 調整 推計하고 있다.

그러나 CPS의 州內 標本集團이 적으면 적을수록 標本誤差가 커지기 때문에 人口特性 等に 따른 細分된 資料는 年間値에 대해서만 公表하고 있다.

問. 勞動力 統計資料를 季節調整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答】

就業과 失業을 包含한 대부분의 統計資料는 季節變化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두달간의 調查結果 變化가 經濟狀態의 變化에 의한 것인지 또는 純全히 季節的 變化에 의한 것인지 區分해서 說明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變化量의 正確한 原因分析을 위해 季節調整이라는 統計分析 技法이 利用된다.

季節的 變化는 每年 日氣變化, 收穫期, 學校開講 및 放學, 休暇철등 定期的으로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季節的 要因은 月別變化에 90%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季節調整目的은 月別變化量에서 이러한 要因에 의한 部分을 除去하여 純全히 經濟的 要因만에 의한 變化量만을 把握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主要 勞動力 統計資料는 季節調整을 하여야 하는데 특히 季節的 影響을 받는 경우로는 6月の 放學期를 맞이한 10代 靑少年들이 勞動市場에의 大量流入과 겨울철의 酷寒으로 인한 建設業景氣의 退潮를 들 수 있다.

問. 勞動統計局은 CPS 結果外에도 事業體調查結果를 公表하고 있는 데, 事業體調查結果는 어떠한 資料이며 이들 兩 調查結果를 어떻게 比較 活用할 수 있는지?

【答】

勞動統計局은 CPS外에도 州政府의 協調로 每月 調查하는 經常雇傭 調查(CES,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를 통해서 事業體의 就業者, 勤勞時間, 所得 等の 雇傭統計資料를 蒐集하고 있다.

同 調查는 200,000 個 事業體內 3,000 萬 賃金勤勞者를 對象으로 調查하는데, 調查 結果는 全國 水準 뿐만 아니라 各州 및 워싱턴 D.C., 大都市地域의 産業 細分類別 勤勞者數, 平均 時間當 賃金, 週間 就業時間 等の 資料를 生産·公表하고 있다.

CPS와 CES는 相互 補完的 側面에서 活用될 수 있는데, CPS는 就業 및 失業의 特性 等 個人別 多様な 勤勞狀態를 알 수 있게 하는 包括的인 反面, 産業別로 좀 더 細分된 資料는 事業體調查인 CES의 資料가 보다 더 適合하다.

그런데 兩調查는 調查概念, 調查範圍 및 對象, 調查方法, 結果推定 方法等에서 相異하기 때문에 CES의 事業體名簿를 통해 調查한 勤勞者數와 CPS의 就業者數는 一致할 수 없다. 그러나 長期的인 推勢는 같은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問. CPS의 就業者와 CES의 勤勞者間 概念差異는 무엇인가.

【答】

事業體調査인 CES는 事業體名簿上의 勤勞者에 關한 全般的인 産業別 雇傭現況 資料를 生産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自營業者, 無給家族從事者, 農業從事者 및 家內工業 從事者들이 除外되고 있다.

한편 有給에 依한 病暇, 休暇, 一時休業, 罷業 등으로 賃金支給 期間中 一部分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CPS와 마찬가지로 就業者로 分類된다.

그러나 賃金支給期間의 全 對象期間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CPS에서는 有·無給에 관계없이 일시휴직에 해당되면 就業者로 分類되지만 CES의 경우 賃金台帳에서 漏落되기 때문에 就業한 勤勞者로 分類되지 않는다.

또 다른 重要的 差異는 두가지 이상 職業을 갖고 있는자에 대한 分類方式이다. 즉, CPS는 調査對象者가 몇개의 職業을 갖고 있든지 간에 오직 한번만 調査되는 반면, CES는 調査對象者가 다니고 있는 각 場場別로 調査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面(概念 및 測定方法等)에서 兩調査는 相異하기 때문에 調査結果의 月別變化量 및 月別推勢에서도 差異가 발생할 수 있다.

附

録

附 錄

I. 統計表	43
表 - 1. 經濟活動人口 總括	43
表 - 2. 年今, 性, 人種別 經濟活動人口 (非季節 調整)	44
表 - 3. 就業 및 求職形態 (풀타임, 파트타임)에 따른 就業者, 失業者.....	47
表 - 4. 家口主關係別 就業狀態	48
表 - 5. 配偶關係別 失業狀態	49
表 - 6. 前職業 및 前產業別 失業狀態	50
表 - 7. 失業期間別 失業者	51
表 - 8. 求職 經路別 失業者	52
表 - 9. 職業別 民間 就業者	53
表 - 10. 產業 및 從事上 地位別 民間就業者	54
表 - 11. 產業 및 職業別 就業者.....	55
表 - 12. 產業別 週當 就業時間	56
表 - 13. 失業定義에 따른 諸 失業率	57
表 - 14. 各州 및 主要 大都市別 勞動力 狀態	58
II. CPS 의 資料處理 日程	62

표 - 1 경제활동인구총괄

(천명, %)

년	1) 16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실업율
			군 인	민 간 취업 자							
				농림업	비농림업						
1955	111,747	67,087	64,234	2,064	62,170	6,450	55,722	2,852	4.3	44,660	
1960	119,106	71,489	67,639	1,861	65,778	5,458	60,318	3,852	5.4	47,617	
1965	128,459	76,401	73,034	1,946	71,088	4,361	66,726	3,366	4.4	52,058	
1970	139,203	84,889	80,796	2,118	78,678	3,463	75,215	4,093	4.8	54,315	
1975	154,831	95,453	87,524	1,678	85,846	3,408	82,438	7,929	8.3	59,377	
1980	169,349	108,544	100,907	1,604	99,303	3,364	95,938	7,637	7.0	60,806	
1981	171,775	110,315	102,042	1,645	100,397	3,368	97,030	8,273	7.5	61,460	
1982	173,939	111,872	101,194	1,668	99,526	3,401	96,125	10,678	9.5	62,067	
1983	175,891	113,226	102,510	1,676	100,834	3,383	97,450	10,717	9.5	62,665	
1984	178,080	115,241	106,702	1,697	105,005	3,321	101,685	8,539	7.4	62,839	
1985	179,912	117,167	108,856	1,706	107,150	3,179	103,971	8,312	7.1	62,744	
1986	182,293	119,540	111,303	1,706	109,597	3,163	106,434	8,237	6.9	62,752	

월별자료 (계절조정)

1986. 9	182,713	119,988	111,703	1,716	109,987	3,142	106,845	8,285	6.9	62,725
10	182,935	120,163	111,941	1,749	110,192	3,162	107,030	8,222	6.8	62,772
11	183,114	120,426	112,183	1,751	110,432	3,215	107,217	8,243	6.8	62,688
12	183,297	120,336	112,387	1,750	110,637	3,161	107,476	7,949	6.6	62,961
1987. 1	183,575	120,782	112,759	1,748	111,011	3,145	107,866	8,023	6.6	62,793
2	183,738	121,089	113,122	1,740	111,382	3,236	108,146	7,967	6.6	62,649
3	183,915	120,958	113,104	1,736	111,368	3,284	108,084	7,854	6.5	62,957
4	183,079	121,070	113,570	1,735	111,835	3,290	108,545	7,500	6.2	63,009
5	184,259	121,719	114,173	1,726	112,447	3,335	109,112	7,546	6.2	62,540
6	184,421	121,235	113,975	1,718	112,257	3,178	109,079	7,260	6.0	63,187
7	184,605	121,672	114,447	1,720	112,727	3,219	109,508	7,224	5.9	62,933
8	184,738	122,038	114,817	1,736	113,081	3,092	109,989	7,221	5.9	62,700
9	184,904	121,604	114,515	1,743	112,772	3,176	109,602	7,089	5.8	63,300

1) : 교도소수감자, 요양소, 양노원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 제외

표 - 2 연령, 성, 인종별, 경제활동인구

(천명, %)

	1987. 9월										
	16세이상 인구 (민간인)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율	소계	가사	통학	1) 심신장애	기타
<전 체>											
○ 16세이상	183,161	119,884	65.5	113,027	6,857	5.7	63,277	28,476	8,642	3,144	23,016
· 16~19세	14,637	7,545	51.5	6,305	1,240	16.4	7,092	453	5,816	33	788
· 20~24 //	18,868	14,786	78.4	13,438	1,348	9.1	4,082	1,493	1,805	122	661
· 25~54 //	99,647	82,483	82.8	78,697	3,786	4.6	17,165	12,151	983	1,141	2,890
{ 25~34 //	42,358	35,352	83.5	33,454	1,898	5.4	7,006	5,012	707	285	1,002
{ 35~44 //	33,979	28,817	84.8	27,557	1,259	4.4	5,162	3,753	219	361	829
{ 45~54 //	23,311	18,315	78.6	17,686	629	3.4	4,997	3,386	57	495	1,059
· 55~64 //	21,784	11,870	54.5	11,476	394	3.3	9,914	4,969	25	706	4,214
· 65세이상	28,224	3,199	11.3	3,110	89	2.8	25,026	9,409	12	1,142	14,463
<남 자>											
○ 16세이상	87,102	66,058	75.8	62,622	3,437	5.2	21,043	572	4,345	1,788	14,337
· 16~19세	7,362	3,902	53.0	3,248	653	16.7	3,460	34	2,981	16	429
· 20~24 //	9,134	7,710	84.4	7,062	648	8.4	1,424	38	946	81	358
· 25~54 //	48,677	45,620	93.7	43,746	1,874	4.1	3,058	201	400	798	1,659
{ 25~34 //	20,816	19,675	94.5	18,766	909	4.6	1,141	73	316	193	559
{ 35~44 //	16,583	15,741	94.9	15,144	597	3.8	842	66	70	235	470
{ 45~54 //	11,278	10,204	90.5	9,835	369	3.6	1,075	61	14	370	630
· 55~64 //	10,240	6,887	67.3	6,669	218	3.2	3,353	93	15	431	2,814
· 65세이상	11,688	1,940	16.6	1,897	43	2.2	9,748	207	3	461	9,077
<여 자>											
○ 16세이상	96,059	53,825	56.0	50,405	3,420	6.4	42,234	27,903	4,297	1,355	8,679
· 16~19세	7,275	3,643	50.1	3,057	587	16.1	3,631	419	2,835	17	360
· 20~24 //	9,735	7,077	72.7	6,377	700	9.9	2,658	1,455	860	41	303
· 25~54 //	50,970	36,863	72.3	34,952	1,912	5.2	14,107	11,950	583	343	1,231
{ 25~34 //	21,541	15,677	72.8	14,688	989	6.3	5,864	4,939	391	92	443
{ 35~44 //	17,396	13,076	75.2	12,413	663	5.1	4,320	3,687	149	126	359
{ 45~54 //	12,033	8,111	67.4	7,851	260	3.2	3,922	3,325	43	125	429
· 55~64 //	11,544	4,983	43.2	4,808	176	3.5	6,560	4,876	10	274	1,400
· 65세이상	16,536	1,258	7.6	1,212	46	3.7	15,278	9,203	9	681	5,385

1) : 은퇴자도 포함

표 - 2 연령, 성, 인종별 경제활동인구 - 계속

(천명, %)

	1987. 9월										
	16세이상 인구 (민간인)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율	소계	가사	통학	1) 심신 장애	기타
<백 인>											
○ 16세이상	157,242	103,295	65.7	98,261	5,033	4.9	53,947	24,868	6,685	2,465	19,929
• 16~19세	11,950	6,502	54.4	5,571	931	14.3	5,447	363	4,522	29	533
• 20~24 //	15,686	12,587	80.2	11,641	946	7.5	3,099	1,172	1,394	67	466
• 25~54 //	85,016	70,897	83.4	68,136	2,761	3.9	14,118	10,322	742	872	2,182
{ 25~34//	35,727	30,070	84.2	28,792	1,278	4.3	5,656	4,199	530	221	707
{ 35~44//	29,224	24,897	85.2	23,931	967	3.9	4,327	3,244	164	279	639
{ 45~54//	20,065	15,930	79.4	15,414	516	3.2	4,135	2,878	49	372	836
• 55~64 //	19,189	10,477	54.6	10,156	321	3.1	8,712	4,407	15	566	3,725
• 65세이상	25,402	2,831	11.1	2,757	75	2.6	22,570	8,604	12	931	13,023
<남 자>											
○ 16세이상	75,333	57,604	76.5	55,014	2,590	4.5	17,728	443	3,401	1,387	12,498
• 16~19세	6,024	3,368	55.9	2,881	487	14.5	2,656	23	2,344	12	276
• 20~24 //	7,666	6,585	85.9	6,115	470	7.1	1,081	21	753	46	260
• 25~54 //	42,039	39,755	94.6	38,333	1,422	3.6	2,283	138	294	615	1,237
{ 25~34//	17,784	16,972	95.4	16,333	639	3.8	811	41	234	150	386
{ 35~44//	14,434	13,798	95.6	13,327	471	3.4	636	47	51	183	355
{ 45~54//	9,821	8,985	91.5	8,673	312	3.5	836	49	10	281	496
• 55~64 //	9,078	6,153	67.8	5,972	180	2.9	2,926	76	7	343	2,500
• 65세이상	10,527	1,744	16.6	1,712	32	1.8	8,783	185	2	371	8,224
<여 자>											
○ 16세이상	81,909	45,690	55.8	43,247	2,443	5.3	36,219	24,424	3,285	1,078	7,432
• 16~19세	5,926	3,134	52.9	2,690	444	14.2	2,792	340	2,178	17	257
• 20~24 //	8,020	6,002	74.8	5,526	476	7.9	2,019	1,150	641	21	206
• 25~54 //	42,977	31,142	72.5	29,803	1,339	4.3	11,835	10,184	448	257	945
{ 25~34//	17,943	13,098	73.0	12,459	639	4.9	4,845	4,158	296	71	320
{ 35~44//	14,790	11,099	75.0	10,603	496	4.5	3,691	3,197	113	96	285
{ 45~54//	10,244	6,945	67.8	6,741	204	2.9	3,299	2,829	40	91	340
• 55~64 //	10,111	4,324	42.8	4,183	141	3.3	5,787	4,331	8	223	1,225
• 65세이상	14,875	1,087	7.3	1,045	43	3.9	13,787	8,419	9	560	4,799

1) : 은퇴자도 포함.

표 - 2 연령, 성, 인종별 경제활동인구 - 계속

(천명, %)

	1987. 9월										
	16세이상 인구 (민간인)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율	소계	가사	통학	심신장애	기타
< 총 인 >											
○ 16세이상	20,426	13,018	63.7	11,398	1,619	12.4	7,408	2,756	1,419	614	2,619
• 16~19세	2,171	863	39.8	591	272	31.5	1,307	78	1,009	5	215
• 20~24 //	2,566	1,789	69.7	1,417	372	20.8	778	277	275	51	175
• 25~54 //	11,227	8,977	80.0	8,080	896	10.0	2,249	1,277	134	243	596
{ 25~34 //	5,161	4,171	80.8	3,628	542	13.0	990	574	102	59	256
{ 35~44 //	3,594	2,997	83.4	2,742	255	8.5	597	335	29	72	161
{ 45~54 //	2,472	1,809	73.2	1,711	99	5.5	662	368	3	112	179
• 55~64 //	2,100	1,106	52.6	1,041	65	5.9	994	447	1	124	422
• 65세이상	2,362	283	12.0	269	14	4.9	2,079	677	-	191	1,211
< 남 자 >											
○ 16세이상	9,163	6,466	70.6	5,749	716	11.1	2,697	95	672	362	1,571
• 16~19세	1,070	427	39.9	287	140	32.9	642	8	502	5	128
• 20~24 //	1,167	907	77.7	752	155	17.1	261	14	123	35	89
• 25~54 //	5,029	4,403	87.6	4,026	375	8.5	625	46	48	166	369
{ 25~34 //	2,331	2,081	89.3	1,851	229	11.0	250	23	36	41	152
{ 35~44 //	1,600	1,431	89.4	1,329	102	7.1	169	13	10	45	102
{ 45~54 //	1,098	891	81.2	847	45	5.0	206	10	2	80	115
• 55~64 //	946	585	61.9	550	35	6.0	360	12	-	76	273
• 65세이상	951	144	15.1	133	11	7.4	807	15	-	80	712
< 여 자 >											
○ 16세이상	11,263	6,552	58.2	5,649	903	13.8	4,711	2,661	747	254	1,049
• 16~19세	1,101	436	39.6	304	132	30.2	665	70	507	-	87
• 20~24 //	1,399	881	63.0	664	217	24.6	517	263	152	16	86
• 25~54 //	6,198	4,574	73.8	4,054	521	11.4	1,624	1,231	86	77	227
{ 25~34 //	2,830	2,090	73.9	1,777	313	15.0	740	551	66	18	104
{ 35~44 //	1,994	1,566	78.6	1,413	153	9.8	427	322	19	27	59
{ 45~54 //	1,374	918	66.8	864	54	5.9	456	358	1	32	64
• 55~64 //	1,154	520	45.1	491	30	5.7	634	435	2	48	149
• 65세이상	1,411	140	9.9	136	3	2.4	1,272	662	-	111	499

1) : 은퇴자도 포함.

표 - 3 취업 및 구직형태(풀타임, 파트타임)에 따른 취업자, 실업자 (천명)

	1987. 9 월							
	취업자						실업자	
	풀타임			파트타임			풀타임 희망	파트타임 희망
	계	풀타임	1) 파트타임	계	자발적	2) 비자발적		
<전 체>								
○ 16 세 이 상	93,771	92,327	1,444	19,256	15,763	3,493	5,228	1,629
• 16 ~ 19	2,342	2,232	110	3,964	3,546	418	552	688
• 20 ~ 24	10,573	10,295	278	2,866	2,170	696	1,050	298
• 25 ~ 54	69,680	68,764	916	9,017	7,074	1,943	3,278	508
• 55+	11,176	11,036	140	3,411	2,975	436	348	135
○ 남 자 16 세 이 상	56,381	55,542	839	6,240	4,810	1,430	2,846	591
• 16 ~ 19	1,328	1,269	59	1,921	1,742	179	301	352
• 20 ~ 24	5,878	5,708	170	1,184	852	332	533	115
• 25 ~ 54	42,006	41,483	523	1,739	990	749	1,802	72
• 55+	7,170	7,082	88	1,397	1,227	170	209	52
○ 여 자 16 세 이 상	37,390	36,785	605	13,016	10,953	2,063	2,382	1,038
• 16 ~ 19	1,014	963	51	2,043	1,804	239	250	336
• 20 ~ 24	4,695	4,587	108	1,682	1,318	364	517	183
• 25 ~ 54	27,675	27,281	394	7,277	6,083	1,194	1,476	436
• 55+	4,007	3,954	53	2,012	1,747	265	139	83
<백 인>								
○ 남 자 16 세 이 상	49,566	48,853	713	5,448	4,318	1,130	2,128	462
• 16 ~ 19	1,164	1,113	51	1,718	1,566	152	227	259
• 20 ~ 24	5,107	4,959	148	1,009	764	245	366	104
• 25 ~ 54	36,886	36,453	433	1,449	858	591	1,363	58
• 55+	6,411	6,329	82	1,273	1,131	142	172	41
○ 여 자 16 세 이 상	31,539	31,019	520	11,708	10,054	1,654	1,607	836
• 16 ~ 19	879	836	43	1,811	1,615	196	171	273
• 20 ~ 24	4,064	3,963	101	1,462	1,176	286	334	142
• 25 ~ 54	23,153	22,817	336	6,650	5,680	970	993	345
• 55+	3,444	3,403	41	1,785	1,583	202	109	74
<흑 인>								
○ 남 자 16 세 이 상	5,156	5,054	102	593	358	235	614	102
• 16 ~ 19	134	130	4	153	137	16	65	76
• 20 ~ 24	633	615	18	120	52	68	150	5
• 25 ~ 54	3,805	3,729	76	223	90	133	365	10
• 55+	583	580	3	100	81	19	35	12
○ 여 자 16 세 이 상	4,633	4,562	71	1,016	669	349	724	179
• 16 ~ 19	119	114	5	185	146	39	75	57
• 20 ~ 24	493	486	7	171	108	63	179	38
• 25 ~ 54	3,589	3,542	47	463	274	189	444	77
• 55+	432	421	11	196	138	58	26	6

1) : 평소에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인해 파트타임의 일을 한자

2) : 평소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파트타임의 일을 한자

표 - 4 가구원 관계별 취업상태

(천명, %)

가 구 원 관 계	1987.9 월									
	경제활동인구(민간인)					비 경제 활동 인 구				
	계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율	계	가 사	통 학	심 신	기 타
16세 이상 인구 ¹⁾	97,403	65.9	91,802	5,601	5.8	50,504	23,179	7,906	2,317	17,102
○ 남 편	39,894	78.6	38,676	1,218	3.1	10,890	230	182	879	9,599
· 부 인 취 업	25,324	92.1	24,622	703	2.8	2,160	67	100	337	1,657
· 부 인 실 업	1,078	93.3	961	117	10.9	77	6	2	14	54
· 부 인 비 경 활	13,491	60.9	13,093	398	3.0	8,653	158	80	528	7,888
○ 부 인	28,640	56.4	27,484	1,155	4.0	22,144	18,200	347	371	3,226
· 남 편 취 업	25,583	66.1	24,622	961	3.8	13,093	11,685	303	135	970
· 남 편 실 업	820	67.3	703	117	14.3	398	352	7	10	30
· 남 편 비 경 활	2,237	20.5	2,160	77	3.4	8,653	6,163	37	226	2,227
○ 기 혼 가 정 의 가 구 원	12,973	61.6	11,472	1,502	11.6	8,104	776	5,377	368	1,583
· 16 ~ 19 세	4,880	50.5	4,171	709	14.5	4,783	117	4,177	21	468
· 20 ~ 24 세	4,656	75.5	4,211	445	9.6	1,511	144	1,065	54	248
· 25 세 이 상	3,438	65.5	3,090	348	10.1	1,810	515	135	293	862
○ 가 계 책 임 을 맡 고 있 는 여 자	6,583	62.2	5,964	618	9.4	3,998	2,791	178	208	819
○ 가 계 책 임 을 맡 고 있 는 여 자 가 구 가 구 원	5,607	60.3	4,772	834	14.9	3,698	782	1,539	303	1,073
· 16 ~ 19 세	1,419	48.5	1,092	327	23.1	1,508	87	1,212	8	201
· 20 ~ 24 세	1,605	74.0	1,382	223	13.9	564	133	265	39	127
· 25 세 이 상	2,582	61.4	2,298	284	11.0	1,626	562	62	256	745
○ 가 계 책 임 을 맡 고 있 는 남 자	2,030	75.6	1,913	117	5.8	655	46	25	102	482
○ 가 계 책 임 을 맡 고 있 는 남 자 가 구 가 구 원	1,676	62.3	1,521	155	9.2	1,016	354	258	86	318
· 16 ~ 19 세	287	53.8	239	48	16.6	247	19	172	1	54
· 20 ~ 24 세	464	75.4	410	54	11.6	151	44	67	7	33
· 25 세 이 상	925	59.9	872	53	5.7	618	291	19	78	231

1) 독신자, 단독가구, 군인이 가구주인 가구, 비혈연 가구원 등은 제외

주: 가계책임을 맡고 있는 남편, 부인, 여자의 추계치는 자료집계상의 방법, 정의등의 상이함으로 인해 배우관계에 따른 자료의 추계치와 다름.

표 - 5 배우관계별 실업상태

(천명, %)

	1987.9 월							
	남 자				여 자			
	실 업 자		실 업 율		실 업 자		실 업 율	
	1986.9	1987.9	1986.9	1987.9	1986.9	1987.9	1986.9	1987.9
○ 16세 이상인구	4,177	3,437	6.4	5.2	3,839	3,420	7.3	6.4
· 기혼 · 유배우	1,567	1,337	3.8	3.2	1,537	1,284	5.3	4.3
· 이혼 · 별거	514	395	8.1	6.1	820	811	7.9	7.6
· 독 신	2,095	1,705	12.0	9.7	1,482	1,325	11.1	9.8
— 백인 16세 이상	3,104	2,590	5.4	4.5	2,772	2,443	6.2	5.3
· 기혼 · 유배우	1,306	1,121	3.5	3.0	1,269	1,039	4.9	4.0
· 이혼 · 별거	371	276	7.0	5.1	578	561	7.0	6.6
· 독 신	1,426	1,193	9.8	8.1	926	843	8.6	7.7
— 흑인 16세 이상	929	716	14.7	11.1	943	903	14.9	13.8
· 기혼 · 유배우	197	170	6.4	5.3	197	206	8.5	8.6
· 이혼 · 별거	137	109	14.2	11.5	220	233	12.0	12.4
· 독 신	595	437	25.9	18.9	527	464	24.2	20.2
○ 25세 이상인구	2,551	2,135	4.8	3.9	2,393	2,133	5.7	4.9
· 기혼 · 유배우	1,422	1,211	3.6	3.0	1,224	1,043	4.6	3.8
· 이혼 · 별거	479	374	7.8	6.0	743	745	7.5	7.3
· 독 신	650	551	8.3	6.8	426	345	7.7	5.9
— 백인 25세 이상	1,954	1,634	4.2	3.4	1,760	1,523	4.9	4.2
· 기혼 · 유배우	1,183	1,017	3.3	2.8	1,017	843	4.3	3.5
· 이혼 · 별거	348	264	6.9	5.1	514	515	6.5	6.4
· 독 신	423	353	6.6	5.3	230	165	5.4	3.7
— 흑인 25세 이상	511	421	10.2	8.2	549	554	11.0	10.6
· 기혼 · 유배우	183	148	6.2	4.9	149	167	7.1	7.6
· 이혼 · 별거	129	100	13.7	10.8	212	214	11.9	11.7
· 독 신	199	174	17.6	15.0	189	173	17.1	14.3

표 - 6 전직업 및 전산업별 실업상태

(천명, %)

	1987.9 월							
	실업자		실업률					
	계		계		남자		여자	
	1986.9	1987.9	1986.9	1987.9	1986.9	1987.9	1986.9	1987.9
○ 16세 이상	8,015	6,857	6.8	5.7	6.4	5.2	7.3	6.4
· 관리·전문직	735	689	2.7	2.4	2.4	2.0	3.0	2.9
· 기술·판매·행정직	1,784	1,622	4.9	4.4	3.8	3.3	5.5	5.0
· 서비스직	1,360	1,197	8.6	7.5	7.8	6.9	9.1	7.9
· 생산·수선직	864	742	6.0	5.1	5.8	5.0	7.8	6.0
· 장비운전·노무직	1,925	1,502	10.0	7.8	9.7	7.4	11.1	8.9
· 농림·어업직	260	219	6.7	5.8	5.9	5.5	10.9	7.3
· 신규	1,023	854	-	-	-	-	-	-
· 16 ~ 19세	665	565	-	-	-	-	-	-
· 20 ~ 24세	230	146	-	-	-	-	-	-
· 25세 이상	127	142	-	-	-	-	-	-
○ 비농림업취업자 (임금근로자)	5,948	5,095	6.7	5.7	6.4	5.4	7.1	6.0
· 광업	109	49	11.7	5.8	12.7	5.6	6.6	7.1
· 건설업	642	604	10.2	9.6	10.3	9.8	9.2	7.6
· 제조업	1,482	1,191	6.7	5.4	5.8	4.9	8.6	6.4
· 운수·통신	287	240	4.6	3.8	4.3	3.6	5.3	4.5
· 도소매업	1,674	1,428	7.5	6.3	6.4	5.3	8.6	7.3
· 금융·보험·부동산업	276	229	3.9	3.1	3.9	2.8	3.9	3.3
· 서비스업	1,478	1,354	6.3	5.6	6.0	5.3	6.5	5.8
○ 농림업(임금근로자)	203	132	11.4	7.3	10.3	6.8	15.2	9.5
○ 정부공무원, 자영주, 무급가족종사자	840	776	3.1	2.8	3.1	2.2	3.2	3.5

표 - 7 실업기간별 실업자

(천명, %)

실업기간	실업자				상시근로희망실업자			
	수		백분비		수		백분비	
	1986.9	1987.9	1986.9	1987.9	1986.9	1987.9	1986.9	1987.9
○ 16세 이상	8,015	6,857	100.0	100.0	6,321	5,228	100.0	100.0
· 5주 미만	3,594	3,391	44.8	49.5	2,456	2,253	38.9	43.1
· 5 ~ 14주	2,323	1,764	29.0	25.7	1,954	1,442	30.9	27.6
{ 5 ~ 10주	1,675	1,250	20.9	18.2	1,414	1,036	22.4	19.8
{ 11 ~ 14주	648	515	8.1	7.5	540	407	8.5	7.8
· 15주 이상	2,097	1,701	26.2	24.8	1,911	1,532	30.2	29.3
15 ~ 26주	908	744	11.3	10.9	802	649	12.7	12.4
· 27주 이상	1,190	957	14.8	14.0	1,109	884	17.5	16.9
{ 27 ~ 51주	474	411	5.9	6.0	444	384	7.0	7.3
{ 52주 이상	715	546	8.9	8.0	665	500	10.5	9.6
○ 평균 실업주간	15.0	13.9	-	-	17.0	16.0	-	-
○ 중위수 (실업주간)	6.3	5.1	-	-	7.8	6.8	-	-

표 - 8 구직경로별 실업자

(천명, %)

성·연령·인종	1987.9 월								평균구직 방법 수
	수		구직경로별 백분비						
	실업자	구직자	직업안정 기관	시설취업 기관	기업체 방문	구직광고	친 지	기 타	
○ 16 세 이상	6,857	6,035	20.9	5.9	75.2	34.9	15.7	5.6	1.58
• 16~19 세	1,240	1,180	11.9	3.3	79.7	27.5	13.9	5.1	1.41
• 20~24	1,348	1,182	18.9	6.3	74.0	33.2	12.9	3.0	1.48
• 25~34	1,898	1,660	25.0	5.3	75.1	38.4	14.2	5.1	1.63
• 35~44	1,259	1,088	26.7	7.1	74.8	39.0	17.9	6.9	1.72
• 45~54	629	520	24.4	9.2	72.1	37.5	20.6	8.3	1.72
• 55~64	394	323	16.1	7.4	75.9	33.7	23.8	9.6	1.67
• 65 세 이상	89	88	14.5	9.6	51.8	30.1	19.3	7.2	1.33
○ 남자 16 세 이상	3,437	2,889	21.6	5.1	76.2	32.8	18.9	6.6	1.61
• 16~19 세	653	607	11.4	1.5	80.4	26.9	17.0	4.8	1.42
• 20~24	648	549	20.9	6.7	73.2	33.2	16.4	2.9	1.53
• 25~34	909	740	25.3	4.1	78.2	35.0	16.6	5.0	1.64
• 35~44	597	477	29.8	6.7	75.9	37.1	21.0	9.2	1.80
• 45~54	369	294	25.9	8.2	74.1	34.0	27.2	12.2	1.82
• 55~64	218	183	15.8	7.7	69.9	32.2	24.0	15.8	1.66
• 65 세 이상	43	39	(¹)						
○ 여자 16 세 이상	3,420	3,147	20.1	6.7	74.4	36.9	12.7	4.5	1.55
• 16~19 세	587	573	12.4	5.2	78.7	28.3	10.6	5.4	1.41
• 20~24	700	633	17.1	5.8	74.7	33.5	9.8	3.0	1.44
• 25~34	989	920	24.8	6.4	72.6	41.1	12.3	5.1	1.62
• 35~44	663	610	24.4	7.4	74.3	40.7	15.6	5.2	1.68
• 45~54	260	226	22.6	10.6	69.9	42.5	12.4	2.7	1.61
• 55~64	176	141	16.3	7.1	83.0	35.5	22.7	2.1	1.67
• 65 세 이상	46	44	(¹)						
○ 백인 16 세 이상	5,033	4,373	19.9	6.6	75.1	36.7	15.8	6.1	1.60
• 남 자	2,590	2,140	21.2	5.7	75.5	34.7	19.0	7.2	1.63
• 여 자	2,443	2,232	18.7	7.4	74.6	38.6	12.7	5.0	1.57
○ 흑인 16 세 이상	1,619	1,477	24.1	4.3	75.5	30.3	14.2	4.1	1.52
• 남 자	716	634	23.0	3.2	79.2	27.4	15.5	5.5	1.54
• 여 자	903	843	24.9	5.1	72.7	32.6	13.0	3.2	1.52

1) 베이스가 75,000 이하임.

주: 「구직자」에 일시해고, 30 일 이내 개업준비중인자 등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자수 보다 구직자가 적다. 한편 많은 구직자가 한가지 이상의 구직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직경로별 백분비 합이 100 보다 크다.

표-9 직업별 민간취업자

(천명, %)

직업 · 인종	계		남자		여자	
	1986.9	1987.9	1986.9	1987.9	1986.9	1987.9
계						
○ 16세 이상 (천명)	110,229	113,027	61,243	62,622	48,986	50,405
백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관리 · 전문직	24.4	24.9	24.9	25.1	23.8	24.5
· 기술 · 판매 · 행정직	31.2	31.0	19.7	19.7	45.6	45.2
· 서비스직	13.1	13.1	9.0	9.2	18.2	17.8
· 생산 · 수선직	12.3	12.1	20.3	20.1	2.3	2.3
· 장비운전 · 노무직	15.7	15.7	21.1	21.1	8.9	9.1
· 농림어업직	3.3	3.2	5.0	4.9	1.2	1.1
백인						
○ 16세 이상 (천명)	96,262	98,261	54,099	55,014	42,164	43,247
백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관리 · 전문직	25.4	25.9	25.9	26.2	24.8	25.5
· 기술 · 판매 · 행정직	31.8	31.5	20.1	20.0	46.8	46.1
· 서비스직	11.9	11.9	8.1	8.3	16.8	16.5
· 생산 · 수선직	12.7	12.7	20.9	20.8	2.3	2.3
· 장비운전 · 노무직	14.8	14.7	19.9	19.7	8.2	8.4
· 농림어업직	3.4	3.3	5.1	5.0	1.3	1.2
흑인						
○ 16세 이상 (천명)	10,785	11,398	5,404	5,749	5,381	5,649
백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관리 · 전문직	14.9	14.8	13.1	12.7	16.6	17.0
· 기술 · 판매 · 행정직	26.4	27.3	14.8	15.7	38.1	39.0
· 서비스직	23.0	22.2	17.0	17.1	29.0	27.4
· 생산 · 수선직	9.2	8.3	15.9	14.5	2.4	1.9
· 장비운전 · 노무직	24.1	25.1	34.9	35.9	13.4	14.0
· 농림어업직	2.4	2.3	4.2	4.1	0.5	0.5

표 - 10 산업 및 종사상 지위별 민간취업자

(천명)

연령·성	1987. 9월								
	입금근로자				자영주	무급가족 종사자	농림업		
	계	가내 근로자	공공 기관	기타			입금 근로자	자영주	무급가족 종사자
계 16세 이상	101,229	1,088	16,864	83,277	8,217	303	1,670	1,477	130
· 16~19세	6,006	213	258	5,534	55	15	187	19	23
· 20~24 "	12,655	110	1,120	11,424	364	36	302	70	10
· 25~34 "	30,615	145	4,333	26,087	1,946	78	527	261	26
· 35~44 "	24,460	190	5,261	19,009	2,424	64	284	312	14
· 45~54 "	15,500	146	3,404	11,950	1,646	64	180	274	22
· 55~64 "	9,756	162	2,059	7,535	1,227	34	124	321	15
· 65세이상	2,238	121	379	1,738	556	11	67	220	18
남자 16세 이상	54,558	180	8,065	46,313	5,376	60	1,351	1,222	54
· 16~19세	3,013	68	143	2,802	29	12	159	12	23
· 20~24 "	6,475	24	514	5,937	234	23	256	65	9
· 25~34 "	16,869	22	2,073	14,774	1,242	9	419	221	5
· 35~44 "	13,106	24	2,457	10,626	1,565	1	220	251	1
· 45~54 "	8,412	17	1,646	6,749	1,067	6	138	212	1
· 55~64 "	5,450	9	1,040	4,400	852	1	97	266	2
· 65세이상	1,233	16	192	1,025	386	8	62	195	13
여자 16세 이상	46,671	908	8,799	36,964	2,841	243	319	255	76
· 16~19세	2,992	145	115	2,732	26	3	28	7	-
· 20~24 "	6,180	86	606	5,487	130	13	46	6	2
· 25~34 "	13,746	123	2,310	11,313	704	69	108	40	21
· 35~44 "	11,353	166	2,804	8,383	858	63	64	61	14
· 45~54 "	7,088	130	1,758	5,201	579	58	42	62	21
· 55~64 "	4,307	153	1,018	3,135	375	33	26	54	13
· 65세이상	1,005	105	186	713	169	4	5	24	5

표-11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천명)

산 업	1987.9 월						
	계	관리· 전문	기술·판매 행 정	서비스	생산· 수 선	장비운전· 노 무	농림어업
· 농 림 어 업	3,277	80	25	-	29	24	2,824
· 광 업	816	125	33	-	258	20	2
· 건 설 업	7,668	966	62	-	4,354	75	22
· 제 조 업	21,252	2,395	686	-	4,030	6,812	88
· 교 통 통 신 업	8,014	914	252	-	1,296	117	17
· 도 · 소 매 업	23,351	1,993	104	-	1,507	337	45
· 금융·보험·부동산	7,883	1,987	159	-	148	21	67
· 서 비 스 업	35,537	4,083	1,898	816	1,845	722	449
· 공 공 행 정	5,229	1,149	215	-	248	36	63

표-12 산업별 주당취업시간

(천명, %)

	1987.9 월					
	수			백 분 비		
	전 산업	농림업	비·농림업	전 산업	농림업	비·농림업
계	107,223	3,185	104,038	100.0	100.0	100.0
· 1~34시간	45,963	1,014	44,949	42.9	31.9	43.2
· 1~4 시간	684	41	643	0.6	1.3	0.6
· 5~14 시간	4,550	199	4,351	4.2	6.3	4.2
· 15~29 시간	14,539	438	14,101	13.6	13.8	13.6
· 30~34 시간	26,190	336	25,854	24.4	10.6	24.9
· 35시간이상	61,260	2,169	59,091	57.1	68.1	55.8
· 35~39 시간	7,084	161	6,923	6.6	5.1	6.7
· 40 시간	28,663	530	28,133	26.7	16.7	27.0
· 41 시간이상	25,513	1,478	24,035	23.8	46.4	23.1
┌ 41~48시간	8,265	202	8,063	7.7	6.3	7.7
└ 49~59시간	9,481	410	9,071	8.8	12.9	8.7
└ 60 시간이상	7,767	866	6,901	7.2	27.2	6.6
· 평균취업시간	37.1	44.3	36.9	-	-	-

표 -13 「실업」정의에 따른 제 실업율

(%)

	분 기 별					월 별		
	1986			1987		1987		
	2/4	3/4	4/4	1/4	2/4	6	7	8
U-1 : 민간노동력인구에 대한 실업기간이 15주이상인 실업자의 백분비	1.9	1.9	1.8	1.8	1.7	1.7	1.6	1.6
U-2 : 민간노동력인구에 대한 실직자 (Job loser) 만의 백분비	3.5	3.4	3.3	3.3	3.0	3.0	2.9	2.8
U-3 : 민간노동력인구에 대한 실업자의 백분비	5.5	5.4	5.4	5.1	4.7	4.6	4.7	4.7
U-4 : 풀타임근로의 민간노동력인구에 대한 풀타임 구직희망 실업자의 백분비	6.8	6.6	6.5	6.3	5.9	5.9	5.7	5.6
U-5a: 균인력을 포함한 노동력 인구에 대한 실업자의 백분비	7.0	6.8	6.8	6.6	6.1	6.0	5.9	5.9
U-5b: 민간노동력인구에 대한 실업자의 백분비	7.1	6.9	6.9	6.7	6.2	6.1	6.0	6.0
U-6 : 파트타임 근로자의 1/2 을 제외한 민간노동력인구에 대한 풀타임 근로희망구직자, 파트타임 근로희망구직자의 1/2,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의 1/2 을 각각 합한 숫자의 백분비	9.6	9.3	9.2	9.0	8.4	8.3	8.3	8.2
U-7 : 파트타임 근로자의 1/2 을 제외한 민간노동력인구, 구직단념자를 합한 것에 대한 풀타임 근로희망구직자, 파트타임 근로희망구직자의 1/2,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의 1/2, 구직 단념자를 각각 합한 숫자의 백분비	10.5	10.2	10.2	10.0	9.3	-	-	-

표-14 각주 및 주요대도시 노동력상태

(천명, %)

	민간노동력			실업자			실업율		
	1986.8	1987.7	1987.8 ^p	1986.8	1987.7	1987.8 ^p	1986.8	1987.7	1987.8 ^p
Alabama	1,909.9	1,900.5	1,901.5	189.5	146.6	137.3	9.9	7.7	7.2
Birmingham	446.9	451.7	450.8	39.6	30.2	28.2	8.9	6.7	6.3
Alaska	273.7	265.9	261.1	26.9	25.8	23.9	9.8	9.7	9.1
Arizona	1,581.1	1,605.0	1,614.4	115.9	109.0	97.3	7.3	6.8	6.0
Phoenix	975.6	998.1	1,004.9	56.3	53.6	48.1	5.8	5.4	4.8
Arkansas	1,081.9	1,087.5	1,096.5	89.4	86.0	83.6	8.3	7.9	7.6
California	13,541.3	13,980.7	13,891.5	901.8	838.6	750.9	6.7	6.0	5.4
Los Angeles-long beach	4,123.0	4,272.0	4,210.0	322.0	282.0	247.0	7.8	6.6	5.9
San Diego	1,029.9	1,078.0	1,080.2	51.8	52.6	48.4	5.0	4.9	4.5
San Francisco	878.1	894.3	893.9	40.6	36.9	34.1	4.6	4.1	3.8
Colorado	1,696.5	1,664.6	1,668.4	119.6	118.6	106.6	7.1	7.1	6.4
Denver	901.4	881.4	886.1	58.2	58.8	53.3	6.5	6.7	6.0
Connecticut	1,749.9	1,784.8	1,796.2	63.9	60.1	56.8	3.6	3.4	3.2
Delaware	333.3	341.1	336.7	12.9	11.7	9.4	3.9	3.4	2.8
District of Columbia	341.2	359.9	358.4	25.8	21.8	21.8	7.6	6.0	6.1
Washington	2,067.2	2,160.6	2,149.5	71.6	71.7	68.6	3.5	3.3	3.2
Florida	5,711.2	5,985.4	5,925.3	338.1	355.8	336.4	5.9	5.9	5.7
Georgia	3,088.7	3,078.1	3,082.3	182.9	161.0	155.5	5.9	5.2	5.0
Atlanta	1,436.2	1,464.1	1,457.2	68.1	65.8	64.7	4.7	4.5	4.4
Hawaii	494.3	510.6	506.8	24.1	20.2	18.9	4.9	4.0	3.7
Idaho	486.8	464.8	477.5	44.5	35.3	33.9	9.1	7.6	7.1
Illinois	5,751.1	5,874.0	5,864.5	452.7	419.3	398.9	7.9	7.1	6.8
Chicago	3,156.5	3,238.4	3,232.5	231.6	213.1	203.7	7.3	6.6	6.3
Indiana	2,760.1	2,767.6	2,773.8	171.4	171.1	160.7	6.2	6.2	5.8

표 -14 각주 및 주요대도시 노동력상태 -계속

(천명, %)

	민 간 노 동 력			실 업 자			실 업 율		
	1986.8	1987.7	1987.8 ^p	1986.8	1987.7	1987.8 ^p	1986.8	1987.7	1987.8 ^p
Indianapolis	655.1	663.6	665.6	30.1	34.1	32.2	4.6	5.1	4.8
Iowa	1,439.4	1,448.0	1,414.7	92.6	67.2	65.8	6.4	4.6	4.6
Kansas	1,229.6	1,254.0	1,238.0	64.4	55.6	52.6	5.2	4.4	4.2
Kentucky	1,694.3	1,679.9	1,671.4	145.3	148.7	124.5	8.6	8.9	7.4
Louisiana	2,003.5	1,956.0	1,961.6	275.9	211.9	202.4	13.8	10.8	10.3
New orleans	610.6	602.5	604.8	70.1	55.6	54.2	11.5	9.2	9.0
Maine	583.9	605.2	618.8	25.8	29.9	18.7	4.4	4.9	3.0
Maryland	2,389.7	2,427.7	2,407.5	99.6	102.1	93.4	4.2	4.2	3.9
Baltimore	1,165.1	1,168.9	1,158.6	57.5	52.9	49.5	4.9	4.5	4.3
Massachusetts	3,136.7	3,132.0	3,153.4	116.0	79.9	88.7	3.7	2.6	2.8
Boston	1,542.9	1,546.5	1,553.4	50.6	34.1	39.0	3.3	2.2	2.5
Michigan	4,418.5	4,598.8	4,685.7	348.0	406.9	389.4	7.9	8.8	8.3
Detroit	2,136.2	2,249.6	2,275.1	161.9	214.5	192.3	7.6	9.5	8.5
Minnesota	2,223.4	2,270.8	2,261.1	93.0	104.3	103.6	4.2	4.6	4.6
Minneapolis-st. pavl	1,318.4	1,348.5	1,346.0	46.5	52.9	53.5	3.5	3.9	4.0
Mississippi	1,171.1	1,158.1	1,158.4	145.8	112.8	113.4	12.4	9.7	9.8
Missouri	2,562.7	2,606.3	2,583.0	153.9	173.6	155.7	6.0	6.7	6.0
St. Louis	1,258.1	1,271.6	1,261.0	93.0	92.6	83.7	7.4	7.3	6.6
Montana	418.2	399.9	401.0	28.6	23.4	23.1	6.8	5.9	5.8
Nebraska	811.3	821.3	803.5	33.6	36.3	32.8	4.1	4.4	4.1
Nevada	548.4	569.7	567.1	28.5	33.5	32.0	5.2	5.9	5.6
New Hampshire	573.8	605.9	611.5	14.5	16.0	12.8	2.5	2.6	2.1
New Jersey	3,951.1	4,025.0	4,022.0	176.4	181.5	155.2	4.5	4.5	3.9
Newark	964.7	980.9	976.4	46.5	46.9	40.7	4.8	4.8	4.2

표 - 14 각주 및 주요대도시 노동력상태 - 계속

(천명, %)

	민 간 노 동 력			실 업 자			실 업 율		
	1986.8	1987.7	1987.8 ^P	1986.8	1987.7	1987.8 ^P	1986.8	1987.7	1987.8 ^P
New Mexico	680.1	677.9	672.2	61.6	58.2	55.9	9.1	8.6	8.3
New York	8,530.3	8,674.0	8,668.6	500.6	393.6	376.4	5.9	4.5	4.3
New York city	3,180.0	3,246.0	3,316.0	218.0	195.0	169.0	6.9	6.0	5.1
North Carolina	3,252.0	3,389.4	3,351.2	166.6	160.2	139.9	5.1	4.7	4.2
North Dakota	356.5	347.0	345.2	18.4	13.7	13.0	5.2	4.0	3.8
Ohio	5,261.1	5,325.5	5,271.9	422.8	358.0	363.6	8.0	6.7	6.9
Cleveland	945.4	954.0	941.9	72.6	56.6	59.4	7.7	5.9	6.3
Oklahoma	1,599.7	1,567.1	1,553.4	151.3	111.5	101.9	9.5	7.1	6.6
Oregon	1,364.9	1,362.6	1,366.0	104.5	76.9	73.4	7.7	5.6	5.4
Portland	606.7	615.5	617.9	41.7	31.4	30.8	6.9	5.1	5.0
Pennsylvania	5,789.5	5,787.3	5,828.7	366.3	334.7	302.6	6.3	5.8	5.2
Philadelphia	2,422.6	2,451.3	2,464.3	124.8	122.2	111.5	5.2	5.0	4.5
Rhode Island	512.9	514.5	520.6	19.9	20.6	18.3	3.9	4.0	3.5
South Carolina	1,634.6	1,653.6	1,653.5	99.9	91.5	80.6	6.1	5.5	4.9
South Dakota	356.3	362.4	356.9	13.4	14.0	13.4	3.8	3.9	3.8
Tennessee	2,305.6	2,336.2	2,323.6	177.8	165.9	153.5	7.7	7.1	6.6
Nashville	502.7	509.2	504.0	24.8	24.5	23.4	4.9	4.8	4.6
Texas	8,186.5	8,636.3	8,590.1	745.2	753.8	710.1	9.1	8.7	8.3
Dallas	1,413.4	1,492.5	1,487.6	80.8	100.1	95.8	5.7	6.7	6.4
Houston	1,618.7	1,675.7	1,662.3	176.3	156.1	146.5	10.9	9.3	8.8
Utah	758.7	754.6	756.3	43.2	47.4	45.8	5.7	6.3	6.1
Salt Lake City-Ogden	502.8	501.0	500.7	24.7	28.8	27.4	4.9	5.8	5.5
Vermont	296.7	295.5	299.0	11.6	9.5	8.7	3.9	3.2	2.9
Virginia	2,881.3	3,015.5	2,994.9	136.7	129.8	123.9	4.7	4.3	4.1

표- 14 각주 및 주요대도시 노동력상태 -계속

(천명, %)

	민 간 노 동 력			실 업 자			실 업 을		
	1986.8	1987.7	1987.8 ^p	1986.8	1987.7	1987.8 ^p	1986.8	1987.7	1987.8 ^p
Washington	2,214.6	2,225.1	2,231.9	170.8	157.6	140.7	7.7	7.1	6.3
Seattle	965.9	985.0	987.3	60.8	57.2	52.6	6.3	5.8	5.3
West Virginia	735.9	751.1	739.2	78.1	72.9	67.3	10.6	9.7	9.1
Wisconsin	2,419.9	2,513.2	2,499.9	146.4	129.9	121.0	6.1	5.2	4.8
Milwaukee	709.8	735.7	738.3	40.6	35.2	33.3	5.7	4.8	4.5
Wyoming	255.1	247.2	247.6	19.5	17.2	16.2	7.6	7.0	6.5

CPS 자료 처리일정

1 주 (19일이 포함된 주)							2 주							3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15일차	16일차	17일차	18일차	19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시작 완료된 조사표는 R.O.에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조사표 R.O에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R.O.에서 조사표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표, 가구표 검토 기타 부속자료 검토 검토완료된 자료는 Jeffersonville로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Jeffersonville에서 자료 처리시작 제조사표류 검토 직업, 산업분류기호 기입 조사표류의 마이크로 필름화 자료처리된 마이크로필름을 상무성, 통계국으로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송부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국에서 자료 처리 시작 컴퓨터 처리 입수자료 Editing Error 유무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국 최종자료검토 Editing, 부호검토 자료처리결과 각종 통계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성 노동통계국 자료입수 계절조정 및 동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전 8:30 결과 발표 									

※ R.O.는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로서 전국 12개소가 있다.
R.O.는 조사원 관리 및 조사요령 등의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